강 남 구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제목 행정소송 응소방침

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.

1. 사건내역

○ 사 건 명 : ********** 종합소득세및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

○ 당 사 자 : 원 고 ***

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, ********

○ 소 가 : **********원

○ 관할법원 : 서울행정법원 ***

2. 청구취지

○ 피고가 *********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**********의 부과 처분 중 금**********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소득세 금**********의 부과 처분 중 금**********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.

○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3. 청구원인

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보수금청구소송 판결로 인한 보수금지연배상금 금**********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, 또한 보수금청구소송 중 공탁금 및 감정수수료 등으로 사용된 금**********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하므로, 보수금지연배상금과 필요경비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.

4. 응소이유

구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,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적

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, ******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, 이 사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본 소송에 응소하고자 함.

5. 소송수행자 : 지방세무주사 이덕배, 지방세무주사보 김잔디

붙임 소장(**********) 사본 1부. 끝.

주무관	김잔디	지방소득세1팀장	이덕배	세무2과장	김광수	기획경제국장	전결 11/17 김용운

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장 박도규

시행 세무2과-39685 ( ) 접수 ( )

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5715 /전송 02-3423-8834 / vovoss@gangnam.go.kr / 부분공개